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개과정과 현황: 청소년시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

■ 일 시 : 2011년 8월 9일(화) 10:30 - 13:00

■ 장 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층 회의실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콜로키움(제4차)

■ 발표자

서문희(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연구실장)

■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연구진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혜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민(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영호(백석대학교 교수)

이명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개과정과 현황

서문희(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연구실장)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개과정과 현황

서문희(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연구실장)

1. 평가인증제도 추진 배경과 경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권위 있는 기관이 일정한 기준인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일차적으로 개별 보육시설이 자발적인 참여와 자체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고 보완하며 이후 현장관찰 및 전문적인 평가를 거치면서 보육시설의 현재 운영 수준을 점검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목적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둘째, 보육시설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증진되도록 한다. 셋째,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보육정책 수립의 주체인 정부가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은 보육서비스 수준의 문제가 부각

되면서 논의되었다. 1990년대 1995-1997년 3개년 보육확충사업 사업 등으로 보육서비스 양적 확충 위주의 국가 보육정책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서 학계를 중심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제고와 유지 방안에 관심이 증가되었다. 이는 그 간의 보육서비스 확충이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도 미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도 감독 등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도, 국민들은 여전히 믿고 맡길 곳 이 없다고 하는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민간의 질은 높여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2000년 이후 경기도, 부산 등 지방정부에서 먼저 우수시설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과정으로 어린이집 평가가 실시되고 이를 위한 연구들이 추진되었었다. 이후 중앙정부가 보육서비스 관리방안의 하나로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집이 주를 이루는 국가들에서 성공적 질 관리 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시 포함하게 된다.

아울러 1990년대 후반부터 외국의 사례들이 검토되었다. 평가인증은 민간 시설이 많아서 국가 이들의 질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질적 수준 제고 수단으로, 우리나라 역시 민간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외국의 평가인증이 민간 시설 서비스 질 관리 수단으로 바람직해 보였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검토하였는데 민간에서 실시하는 미국 사례보다는 중앙정부 주도로 국가가 관여하는 호주의 사례가 벤치마킹 대상이었고, 호주 모델을 따라서 우리나라 평가인증 모형이 설계되었다.

미국은 1981년부터 미국 유아교육계의 가장 큰 민간 전문기관인 유아교육협회(NAEYC)를 통하여 유아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를 처음 실시하였다. 1980년대 모형 개발 후 122개 평가인증지표를 채택

하여 1986년부터 성공적인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지표는 수정과 발전을 거듭하여 1991년, 1998년, 2002년 등 수 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NAEYC 인증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수가 급증하여 이부 주 정부는 이를 지원, 활용하고 있다.

호주 역시 민간시설 질 제고 방안의 하나로 1990년 6월에 Crawford 위원회를 설립하여 시설 중심의 종일제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개발하고, 1991년 INAC(Interim National Accreditation Council)를 설립함으로써 평가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3년 3월부터 평가인증제도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최초 상임행정기관으로써 NCAC(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를 설립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조직은 2012년부터는 출연기관 형태에서 정부 조직으로 흡수, 권한이 강화되고 지방조직도 둔다.

우리나라는 2002년 정부 수탁과제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모형을 개발하고,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 2005년도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06년도부터 본격 시행하여 2009년까지 1주기를 마치고 2010년부터는 제2주기로 제1주기와는 다소 다른 지표와 기준으로 운영된다.

각 사업 전개 단계마다 어린이집과 관련 단체의 반발이 심하였으나,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등 재정지원과의 연계, 서울형 어린이집 선정 조건으로 평가인증 활용 등으로 2주기 평가인증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도별 구체적인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 법 개정 이전: 2002년

-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발표(2002. 3)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도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

회(2002.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실시모형 개발관련 연구용역 실시(2002. 4~12)

○ 법 개정 및 시범운영: 2003~2005년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 [영유아보육법 제30조] (2004. 1)
- 평가인증업무 한국여성개발원 위탁(2004. 10)
-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범운영 실시(2005. 1~12)

○ 제1주기 평가: 2006~2009년

- 평가인증업무 육아정책개발센터 위탁(2006. 1)
- 어린이집 평가인증 실시(2006. 1~2008. 9)
- (보육업무 복지부 이관 후) 어린이집 평가인증 개선방안 시행 (2008. 10~2009. 12)
 - 자체점검기간(4~5개월 → 3~4개월)을 단축, 전체 소요기간 6~7개월로 축소
 - 평가인증지표 유형구분의 기준을 21인에서 40인으로 변경
-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추진을 위한 연구 및 공청회 진행 (2009. 3~2009. 12)
 - 평가인증지표와 운영 절차 등 변경

○ 제2주기 평가: 2010~

- 평가인증업무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 위탁(2010. 1~)
-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2010. 2~)
- 어린이집 평가인증 재인증 시행(2010. 8~)
 - 자체점검기간(1개월), 전체 소요기간 4개월 진행

제1주기에 비하여 제2주기 평가인증은 ① 평가지표의 축소, 달성도 높은 항목 통합, 항목신설 등의 변경을 추진하였고, ② 법적 기본사항(설치기준,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확인을 추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였고, ③ 평가인증 신청에서 인증 결정에 이르는 기간을 단축하고¹⁾ ④ 인증의 객관성 및 기준 점수를 강화하였으며, ⑤ 각 지역의 사전조력 인프라를 통해 인증시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였다.

1) 평가인증 과정은 2005년 시범운영 초기에는 9~10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6~7개월의 조정되었고, 2010년부터 6개월(재인증 4개월)로 조정되었음.

<표 1> 제2차 평가인증('10~'13) 주요 변경사항

- **(지표 고도화)** 달성도가 높은 지표는 변별력 확보 및 유사항목 통합,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항목 신설(교수방법, 문제해결 및 호기심 장려)
- 평가인증 통과점수 상향 조정 : 73.33점 → 75점

1차 시행시기('06~'09)	2차 시행시기('10~'13)	비 고
■ 지표 종류 : 3종 - 40인 이상, 39인 이하, 장애 아전담	■ 지표 종류 : 3종 - 40인 이상, 39인 이하, 장애 아전담	■ 1차와 동일
- 40인 이상 : 7영역 80항목 - 39인 이상 : 5영역 60항목 - 장애아전담 : 7영역 85항목	- 40인 이상 : 6영역 70항목 - 39인 이하 : 5영역 55항목 - 장애아전담 : 6영역 75항목	■ 항목 10개 축소 ■ 항목 5개 축소 ■ 항목 10개 축소

- **(운영체계 개선)** 참여자격 완화, 인증취소사유 합리화* 등

* 인증취소사유 : 소재지변경, 정원 증·감에 따른 시설 환경 변화 시 확인방문 이후 인증 유지

- **(점수비중 조정)** 자체점검 하향 조정으로 인증결과의 객관성 향상

구 분	반영 비율	구 분	반영 비율
자체점검보고서	25%	자체점검보고서	10%(15%p↓)
		기본사항확인서(신설)	10%(신설)
현장관찰보고서	50%	현장관찰보고서	55%(5%p↑)
심의위원회 의견서	25%	심의위원회 의견서	25%(유지)
총 계	100%	총 계	100%

- **(지자체 역할 강화)** 기본사항(법적준수사항) 확인(11개 항목*), 참여설명회 주도

* 법적 준수사항 : 총정원 준수, 예·결산서 구비 및 준수여부, 어린이집 설치 기준 등

평가인증결과는 총점 및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한 경우는 인증, 그렇지 못하면 인증유보로 결정된다. 총점 및 영역별 기준

점수는 2.25점(3.00만점)이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인증기간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 홈페이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시설의 시설장이 교체된 경우 인증당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신입 시설장은 교체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시설장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는 평가인증사무국에서 매 심의마다 인증 기준 통과 시설 명단만을 발표하는 형태로 공개되며, 결과는 주로 지방정부가 교사 수당 등 인센티브 제공의 준거로 활용한다.

2주기 평가로 신규 및 재평가를 포함하여 2011년 4월 기준으로는 어린이집의 70%가 평가인증을 받았다. 2005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2009년에 실시한 제1차 평가인증에서 신청 건수는 29,084건으로 어린이집 수 대비 86.8%이고, 인증 통과시설은 20,255 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60.5%이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법인어린이집의 인증률이 96.9%로 가장 높고, 국·공립 어린이집(94.2%), 민간어린이집(7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연차별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참여 및 인증률: 2011. 4

구분	신청 건			인증통과 시설		
	신청소계	신청누계	전체대비 누계비율	인증통과 소계	인증통과 누계	전체대비 누계비율
‘05(시범 실시)	1,089	-	-	650	-	-
‘06(1~4기)	4,420	5,509	16.4	2,804	3,454	10.3
‘07(1~4기)	6,359	11,868	35.4	4,181	7,635	22.8
‘08(1~4기)	7,776	19,644	58.6	5,464	13,099	39.1
‘09(1~4기)	9,440	29,084	86.8	7,156	20,255	60.5
‘10(1~ 기)	8,344	37,428		5,942	26,344	70.1

자료: 어린이집평가인증사무국(2011). 내부자료.

〈표 3〉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참여율, 인증률: 2011. 4

단위: 개소, %

구 분	합계	국·공 립	법인	직장	가정	부 모 협동	민간
전체(A)	38,021	2,034	1,468	401	19,367	74	14,677
인증(C)	26,344	1,916	1,422	260	12,432	27	10,287
인 증 륜 (C/A)	69.3	94.2	96.9	64.8	64.2	36.5	70.1

주: 1) 전체시설은 2008년 12월말 전국 보육통계(33,499개소)를 기준임. 법
인외는 민간개인으로 분류함.

2) 참여신청 시설 수는 신청 후 자체포기, 재신청 등의 이유로 중복
산정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4).

2. 평가인증 운영체계

평가인증 과정은 신청, 자체점검, 평가, 심의 4단계로 진행된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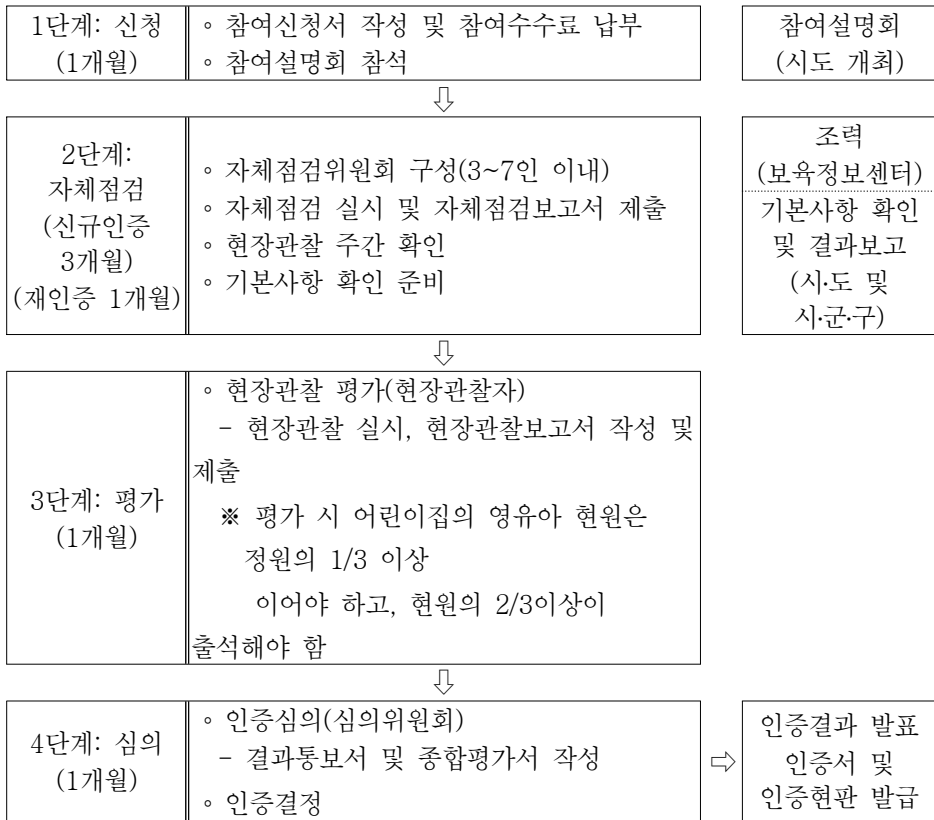
(1) 1단계: 참여신청

평가인증은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신청대상은 신규인증, 재인증, 재참여로 구분된다. 어린이집에서 참여를 신청한 이후에는 적합판정, 참여설명회, 참여수수료 납부, 참여확정 등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인증 과정이 진행된다.

평가인증 대상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으로²⁾, 일정한 참여자격을 갖춘 어린이집에서는 평가인증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2011년도 신규인증은 8기로, 2011년도 재인증은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로서 인증 유효기간이 2011년에 만료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9기로 구분하여 모집, 진행한다.

2)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부모협동, 민간, 직장, 가정 어린이집이 모두 해당됨.



[그림 1] 평가인증 과정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시·도에서 개최하는 참여설명회에 참석하여 운영체계와 평가인증지표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며, 법³⁾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한 참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2011년도 현재 참여수수료는 39인 이하 시설은 25만원, 40인 이상 시설은 30만원이며 장애아 전담 시설은 정원에 따라 40인 이상, 39인 이하 금액을 적용한다.

3)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임.

신청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참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신청이 최종 완료된다.

재인증에 참여하는 인증시설에 대해 인증 유효기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인증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인증유효기간을 연장 조치 한다('06~'09년 인증시설). 단, 기수별 일정에 따라 신청완료하지 않을 시 인증이 종료되며, 재인증 과정 중 참여취소(포기)될 경우에도 인증이 종료된다.

평가인증 과정 진행 동안 소재지 변경, 매매 등으로 인해 대표자 명의가 변경, 참여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 참여과정에서 행정처분사항이 발생 등으로 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한 시설의 경우에는 일정 절차에 따라 참여를 취소하게 된다.

(2) 2단계: 자체점검

자체점검이란 참여설명회 참석을 마친 어린이집에서 본격적으로 평가인증지표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운영전반을 점검, 개선방안을 실행해 가는 과정이다.⁴⁾

자체점검 기간은 신규인증은 3개월, 재인증은 1개월 동안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시설장, 보육교사, 보육아동 부모가 최소 3인에서 7인까지 참여하는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점검을 진행한다. 어린이집의 종사자와 자체점검위원으로 위촉된 부모들이 평가인증지표에 대해 숙지한 후 이를 토대로 운영전반을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다.

4)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평가인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자체점검은 종사자와 보육아동 부모의 참여와 협조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므로 참여시설에서는 자체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평가인증 참여의 필요성과 참여취지에 대해 안내하고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함.

〈표 4〉 필수 항목

항목	평정	평정기준
총 정원 준수	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 이내인 경우
	미 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을 초과한 경우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준수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시설로써 어린이집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시설의 경우 예산서와 결산서를 구비하지 않을 수 있음
	미 준수	예산서 또는 결산서가 없는 경우 회계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준수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과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및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미 준수	영유아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화재보험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준수	법에 의한 행정처분사항이 신청마감일 후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 준수	법에 의한 행정처분사항이 신청마감일 후 발생한 경우

〈표 5〉 기본항목 : 7항목

항목	평정	평정기준
어린이집 의 설치기준	양호 (1점)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미흡 (0점)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중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 있는 경우
보육실의 설치기준	양호 (1점)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기존시설('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시설)은 구법 적용
	미흡 (0점)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종사자 배치기준	양호 (1점)	보육종사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미흡 (0점)	보육종사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사자 정기 건강 검진	양호 (1점)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연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기록 검토)
	미흡 (0점)	건강검진에서 누락된 종사자가 있는 경우
예·결산서 및 재무회 계 관련	양호 (1점)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세입, 세출)예·결산서 구비 : 구체적 산출기초 명기 - 수입·지출 기록 명확 : 영수증 - 수입 : 금융기관 통한 수납, 납부고지서 발급 - 지출 : 5만원 이상 카드결제, 1기관 1계좌 사용
	미흡 (0점)	평가기준 중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행 정 처 분 및 위반사항, 민원사항	양호 (1점)	1년 이내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사항 및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 영유아보육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흡 (0점)	1년 이내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사항 및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년 이내 영유아보육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한 경우
비상대피 시설 설치	양호 (1점)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미흡 (0점)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체점검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를 통하여 법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사항(필수항목 및 기본항목)에 대해 확인이 이루어진다. 기본사항 확인 중 필수항목이 미준수 시설은 참여가 취소된다. 필수항목 및 기본항목은 <표 III-1-1>, <표 III-1-2>과 같다.

자체점검 과정에서 어린이집은 필요 시 보육정보센터에 조력을 신청하여 상담, 교육, 현장방문, 인증시설 방문 등의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여시설에서는 정해진 자체점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최종 결과를 근거로 영역별 점수를 기입하고, 개선한 사항과 시설의 특징과 장점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통해 자체점검보고서에 입력하여 제출한다. 이때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는 현장관찰 결과와 더불어 인증심의 자료로 인증결정에 반영된다.

(3) 3단계: 평가

자체점검을 마친 어린이집에서 자체점검보고서를 입력하여 제출을 완료하면 현장관찰자가 파견된다. 현장관찰은 현장관찰자가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평가인증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관찰, 보고하는 과정이다.

(가) 현장관찰 진행

현장관찰은 현장관찰 기간 1개월 중 관찰주간 1주일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일괄 지정한다. 현장관찰은 공지된 관찰주간 중 현장관찰자가 임의로 정한 하루 동안 실시되며, 현장관찰자는 관찰일 하루 전날 대상시설에 유선으로 통보한다. 어린이집은 공지된 현장관찰주간에 특별한 행사가 없고 일상적 일과가 진행되어야 하며, 영유아

정원의 1/3 이상이 현원으로 재원하고, 현원의 2/3 이상이 출석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현장관찰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현장관찰은 어린이집 1개소 당 현장관찰자 2인이 파견되어 1일간 진행된다. 이때 현장관찰자는 관찰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위해 현장관찰자 거주지와 과거 및 현재 근무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파견한다. 현장관찰은 영유아의 등원시간부터 하원시간까지 하루 종일 진행되는데, 어린이집의 환경,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상호작용 등 하루 일과 전반이 관찰의 대상이 된다. 관찰 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정을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근거로 관찰, 문서검토, 면담 등이 이루어진다.

관찰이 종료된 후 현장관찰자는 개별 현장관찰보고서 각 1부 및 종합 현장관찰보고서 1부를 작성하여 평가인증 시스템에 입력하고, 현장관찰 관련 자료를 밀봉하여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한다. 결과보고서는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자체점검보고서와 함께 인증을 결정 심의자료로 사용된다.

(나) 현장관찰자 선발 및 활동

현장관찰자는 보육과 관련된 일정 이상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서류전형 및 면접·필기전형을 통해 선발된 후 일정한 기간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이며, 활동 중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평가 등을 통해 관리된다. 당해 연도 참여시설에 근무하고 있거나 조력자, 평가인증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활동할 수 없다. 현장관찰자는 상시와 비상시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현장관찰 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개인신상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관찰 활동기간 및 횟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여 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게 된다.

〈표 6〉 평가인증 심의위원 자격

① 학계 전문가	
- 영유아 관련학과 교수	- 기타 보육관련 전문가
② 보육정보센터 및 어린이집 종사자	
-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시설장, 보육교사로서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 이상 : 어린이집 경력(시설장, 보육교사) 총 4년 이상인 자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 이상 : 어린이집 경력(시설장, 보육교사) 총 6년 이상인 자	
※ 단, 당해 연도에 참여시설로 선정되었거나 현장관찰자로 참여하는 경우 평가인증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	
- 보육정보센터장	
③ 보육 담당 공무원	

(4) 4단계: 인증심의

(가) 인증심의 전 필수항목 확인

현장관찰이 완료되면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결과보고서 및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인증심의가 진행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심의가 진행되기 전 현장관찰 완료시설에 대하여 필수항목 준수와 행정처분사항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필수항목을 모두 준수하고 행정처분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시설에 한하여 심의를 진행한다. 즉, 정원준수 여부,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 여부, 예·결산서와 회계장부 구비 여부의 필수항목을 모두 준수하고 행정처분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나) 인증심의 진행

인증심의는 3인 1조로 구성된 평가인증 심의위원회에서 조별로 진행하며, 심의위원 조는 학계 전문가, 보육정보센터장 및 어린이집 종사자, 보육 담당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인증여부를 결정할 점수 산정은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보고서, 현장관찰결과보고서, 심의위원회 의견서가 각각 10%, 10%, 55%, 25%가 반영된다. 심의위원 점수 중 10%는 자체점검보고서와 현장관찰보고서와의 대비오차 점수로 자동적으로 산출하여 포함된다.⁵⁾

(다) 인증결과

인증결과는 총점 및 영역별 기준 점수에 의해 결정되며, 기준 점수는 3점 만점을 기준으로 2.25점이다⁶⁾. 인증은 총점과 영역별 점수 모두 기준점수를 넘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준 점수는 2005년도에는 2.10점이었으나, 시범사업 후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06년 이후 2.20점, 2010년 이후 현재 2.25점으로 조정되었다.

인증결과는 원래 인증, 인증유보, 불인증으로 구분되었으나, 대부분의 불인증 시설이 재참여를 통하여 질적 수준을 개선함에 따라 2008년 4기부터 인증, 인증유보로 구분된다. 인증결과가 확정되면 참여시설은 총점과 영역별 점수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총점 비율간의 차이가 0%~5%는 10점, 5%~7.5%는 8점, 7.5%~10%는 6점, 10%~12.5%는 4점, 12.5%~15%는 2점, 15%이상은 0점을 부여함.

6) 3점 척도로 구성됨.

〈표 7〉 평가인증 심의 기준

심의자료	심의기준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	1. 어린이집의 특징과 장점				
	2. 평가인증기표에 따른 영역별 개선 노력				
	3. 보고서에 나타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4.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				
	<table><tr><th>우수사례</th><th>부적절사례</th></tr><tr><td> · 1급 교사가 전체교사의 30% 이상 ·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전체교사의 70% 이상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 놀이시설 설치 검사(40인 이상) · 취사부 임용(39인 이하) </td><td> · 종사자의 근무상황 부적절 · 반별 초과보육 허용 범위 초과 ·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 영유아 채원사항 부적절 · 혼합반 구성 원칙 무시 </td></tr></table>	우수사례	부적절사례	· 1급 교사가 전체교사의 30% 이상 ·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전체교사의 70% 이상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 놀이시설 설치 검사(40인 이상) · 취사부 임용(39인 이하)	· 종사자의 근무상황 부적절 · 반별 초과보육 허용 범위 초과 ·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 영유아 채원사항 부적절 · 혼합반 구성 원칙 무시
우수사례	부적절사례				
· 1급 교사가 전체교사의 30% 이상 ·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전체교사의 70% 이상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 놀이시설 설치 검사(40인 이상) · 취사부 임용(39인 이하)	· 종사자의 근무상황 부적절 · 반별 초과보육 허용 범위 초과 ·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 영유아 채원사항 부적절 · 혼합반 구성 원칙 무시				
5. 보고서 간 대비오차 자체점검보고서와 현장관찰보고서 총점 간 차이					

(5) 인증유보시설 재참여

인증결과, 인증유보시설은 다시 참여하여 단기간 내 인증에 통과할 수 있도록 재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참여 과정은 신청 후 2개월 동안 재점검한 후 재관찰 및 재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정한 영역의 기준 점수가 미달된 유보시설은 미달된 영역에 대하여, 총점의 기준점수가 미달된 경우는 전체 영역에 대하여 재관찰 및 재심의가 이루어진다. 재참여 결과는 인증과 불인증으로 구분하며, 불인증일 경우 해당 참여과정은 종료된다.

재인증 재참여의 경우, 재참여 기간동안 인증이 유효하며, 재참여를

통한 평가인증 통과 이후 유효기간은 2년 8개월이다.

(6) 인증시설 사후관리

(가) 유효기간

인증시설에게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이 발급되는데, 인증은 인증결과 발표 후 익월 1일을 기준으로 3년간 유효하다.

(나) 연차별 자체점검

인증시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인증시설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며 인증 후 매년 1회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란 평가인증에 통과한 이후에 보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연차별 자체점검은 평가인증 과정에서 자체점검과 동일하게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점검을 진행한 후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력한다.

(다) 교육 및 방문지원 등

평가인증사무국(보건복지가족부)은 인증시설의 서비스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인증시설을 방문하여 지도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이동이 잦은 보육현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인증 시설의 신입교사와 평가인증 이후 신규 임용된 시설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평가

인증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인증시설 ‘보육컨설팅’을 위해 보육정보센터는 평가인증어린이집의 질적수준 유지·향상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평가인증시설의 신청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2011년도 4,300개소)

(라) 인증취소

유효기간 중에도 인증취소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매년 연차별 자체점검 이후 또는 수시로 인증취소사항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와 평가인증사무국(보건복지가족부)은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서 및 현판을 환수한다. 인증 취소 사유는 어린이집 매매 등으로 인해 인증 후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된 경우, 인증 후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인증 유효기간 중 행정처분사항이 발생한 경우,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신임 시설장이 평가인증 관련 교육을 기간 내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다.

3. 평가인증지표

평가인증지표는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평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변별력 있게 개발된 구체화된 평가기준이다. 어린이집은 이 지표를 통해 스스로 운영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점진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현장관찰자는 지표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현재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사용되고 있는 지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과 보육의 질에 대한 개념에 기초하여 구성되었다.

가) 기본방향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는 우리나라 보육의 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표의 토대가 되는 보육의 질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직접 경험하는 보호와 교육의 발달적 적합성,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안전을 위한 환경의 제공,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종사자의 전문성, 합리적인 운영체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의미한다.

평가인증지표의 하위 항목은 보육의 질을 나타내는 다양한 문항들 중에서 어린이집의 자체점검 보고와 현장관찰 과정에서 영역별 신뢰도와 문항 변별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선정되었다.

2차 평가인증에서는 1차 평가인증 시행이후 고시된 표준보육과정의 내용 및 용어를 새로운 지표에 반영함으로써 보육현장이 보다 정확하고 쉽게 지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의 구성

초기 평가인증지표는 21인 이상, 20인 이하,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용의 4종이 개발되었으나, 2005년 시범사업 시행을 거쳐 지표의 종류를 축소하여 2006년부터 2008년 3기까지는 21인 이상, 20인 이하,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용 3종으로 운영되었다. 그 후 소규모 어린이집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이 2008년 4기부터 적용됨에 따라 평가인증지표 적용기준을 40인을 기준으로 하여 달리 구분함으로써 현재 40인 이상, 39인 이하,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용의 3종으로 적용되고 있다.

40인 이상 어린이집용 지표는 6개 영역 7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9인 이하 어린이집용 지표는 5개 영역 55항목,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용 지표는 6개 영역 7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0인 이상 어린이집용 평가인증지표의 영역과 하위 항목은 <표 8>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평가인증지표의 항목별 평가기준은 3단계 기술 평정 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3점은 '우수한 수준'으로 바람직한 실재를 기술하며, 2점은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되는 부분적으로 우수한 실재를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점은 '부적절한 수준'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실재를 기술하고 있다.

각 항목에 대한 3단계 세부 평가기준은 평가인증 지침서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참여시설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자체점검 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표 8〉 40인 이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6개 영역 70항목)

영역	하위 영역
영역 1. 보육환경 (11항목)	가. 어린이집 환경 (3항목) 나. 보육활동 자료 (5항목) 다. 보육지원 환경 (3항목)
영역 2. 운영관리 (12항목)	가. 시설의 운영관리 (3항목) 나. 보육인력 (3항목) 다. 가족과의 협력 (4항목) 라. 지역사회와의 협조 (2항목)
영역 3. 보육과정 (14항목)	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7항목) 나. 보육활동 (7항목)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11항목)	가. 일상적 양육 (3항목) 나. 교사의 상호작용 (6항목) 다. 교수법 (2항목)
영역 5. 건강과 영양 (12항목)	가. 청결과 위생 (8항목) 나. 질병관리 (2항목) 다. 급식과 간식 (2항목)
영역 6. 안전(10항목)	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 (5항목) 나. 영유아의 안전보호 (5항목)

4. 행정 및 지원체계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사무국이 주관 기관으로 추진하지만, 시·도와 시·군·구 행정기관, 그리고 보육정보센터가 행정 및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평가인증사무국과 유관기관의 평가인증 각 단계별 업무내용은 <표 9>와 같다.

지방정부는 신청, 자체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에 참여한다. 신청단계에서는 설명회 개최, 적합판정 확인, 필수항목 및 행정처분사항 확

인(재참여 시설 포함), 취소시설 조치 등을 담당한다. 보육정보센터는 자체점검 단계에서 참여 어린이집을 위한 조력 등을 지원하고 사업안내, 교육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표 9〉 사무국 및 유관기관 평가인증 업무현황

구분	보건복지부 (사무국)	사·도	사·군·구	보육정보센터
신청	- 설명회 지원 - 수수료 수납 - 참여 확정 - 시설 지원관리 - 취소, 포기시설 관리	- 설명회 개최 - 적합판정 확인 - 필수항목 및 행정처분사항 확인 - 취소시설 조치	- 적합판정 - 필수항목 및 행정처분사항 확인 - 취소시설 조치	
자 체 점검	- 보고서 관리	- 보육정보센터 평가인증업무 지원	- 보육정보센터 평가인증업무 지원	- 조력 등 지원 - 사업안내, 교육 및 상담
관찰	- 현장관찰자 선발·교육·파견 - 현장관찰 진행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인증심의, 결정			
사 후 관리	- 인증취소 및 인증시설 사후 관리	- 인증취소 및 인증시설 사후 관리	- 인증취소 및 인증시설 사후 관리	
일반	- 지침서 등 자료 개발 - 홍보	- 홍보	- 홍보	- 각종 정보, 자료 제공

5. 당면과제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평가점수가 평균 87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1주기 평가인증 시행 목표를 일정 부분은 달성하였다고 하겠는데, 평가인증제도에서 앞으로의 정책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결과 활용과 재정 지원과의 연계이다.

현재 인증 결과는 인증통과 시설 명단만 공개하는데, 제도에 대한 부모들의 인지 정도가 높지 않고, 어린이집 선택시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비율도 낮으며, 이용하는 시설의 평가인증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평가인증 결과 총점, 영역별 점수, 장단점을 공개함으로써 부모들이 평가 인증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

또한 보육료 지원 등 재정지원과의 연계가 없어서 평가인증제도가 질적 수준 제고 수단으로 역할을 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고, 재정 지원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와 연계되었다는 증거도 확보하기 어렵다. 2011년부터 교재교구비와 연계하는데, 기본보육료나 차등보육료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호주는 각 영역별로 등급은 최우수(Excellent), 우수(High Quality), 보통(National Quality Standard), 노력 중(Operation Level), 불만족(Unsatisfactory)의 5단계로 나누어 공개하고, 보육료 지원과 연계하여 미인증 시설 이용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영국은 2008년 아동보육규정(The Childcare(Inspection) Regulation 2008) 9항과 10항(regulation 9 and 10), 보육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부모에게 검사 결과보고서 사본을 보내야 하고, 이외 누구라도 이를 원할 경우 무료로 제공하는 규정에 따라서 검사 보고서 전문을 Ofsted(교육, 아동 서비스 및 기술 표준국)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공개하여 누구라도 검색을 통하여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다. 평가는 총괄 및 영역별 A~D의 4단계로 구분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1).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1). 40인 이상 보육시설용 지침서.

서문희·김온기·김은영·송신영 외(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1차 시행의 평가와 추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보육정책개발센터.

서문희·김온기·송신영 외(2010). 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 활성화 및 질 제고 방안. 보건복지부·보육정책연구소.

MEMO

MEMO

MEMO

MEMO

골로키움자료집 11-S24

**보육시설평가인증 전개과정과 현황: 청소년시설
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

인 쇄 2011년 8월 8일

발 행 2011년 8월 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 2263-508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